

2024. 1. 30.(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2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02-2133-3630
	배출관리팀장	장지선	02-2133-3624
사진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쪽수: 15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www.seoul.go.kr/ 서울소식-고시공고	

서울시,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서울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측정기기·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 방지시설 교체 사업장, 측정 결과 평균 먼지 58.9%·총탄화수소 55.5% 감소 확인
- 30일(화)부터 신청 가능...방지시설 지원과 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 지원 구분해 모집

서울시가 도장·도금 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소재 소규모사업장에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450개소이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사업장(4~5종)은 2,400개소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 종류는 대형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많다.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별 사업장 현황 >

계(개소)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80톤 이상)	(20톤 이상80톤미만)	(10톤 이상20톤미만)	(2톤 이상10톤미만)	(2톤 미만)
2,450	17	12	21	791	1,609
100%	0.7%	0.5%	0.9%	32.3%	65.6%

- 서울시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장 대형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저녹스 버너 설치도 지원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종류·용량에 따라 ▲여과 ▲흡착 ▲흡수 방식의 ‘방지시설’을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인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설치해 정상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 ‘저녹스 버너’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특성 조절 또는 연소 시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NOx)과 연료 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하는 장치다.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으로,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 선정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지원 금액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동일 사업으로 지난해 총 137개 소규모사업장에 평균 1,4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특히,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일반버너뿐만 아니라 설치 연도 10년이 지난 저녹스 버너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19년부터 소규모사업장 345개소에 방지시설 설치하고, 474개소에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했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1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교체 전과 비교해 먼지는 58.9%, 총탄화수소는 55.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 먼지 평균 측정치는 교체 전 12.5mg/Sm³에서 교체 후 4.9mg/Sm³, 총탄화수소 평균 측정치는 53.7ppm에서 23.9ppm으로 변화했다.
- 참여 신청은 1월 30일(화)부터 가능하며 서울시·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사물인터넷·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모집 공고하므로 신청자는 지원사업별 신청 기한, 구비서류, 선정 절차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가 필요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00호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서울특별시

1. 사업명 :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사물인터넷, 저녹스 버너)
2. 총사업비 : 1,115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3. 지원대상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 버너
 - (사물인터넷)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스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

- 는 경우에 한함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제외 대상

-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저녹스버너)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5.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6. 우선지원 대상

대상	우선 지원
사물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지사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신규 시설 중 4종 · 신규 시설 중 5종 · 기존 시설 순으로 지원
저녹스 버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로 정하며 각호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조업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업종) ② 제조업이외의 사업장 · 노후 저녹스 버너의 교체하는 경우 시설의 저녹스 버너 설치기준 10년 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녹스 버너보다 대기오염물질 개선효율이 높은 시설을 지원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료전환(BC유→LNG)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사업장 ③ 버너설치년수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7. 지원내용 :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1)

8. 신청기간 : 2024. 1. ~ 11.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9.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10. 신청서 서류

-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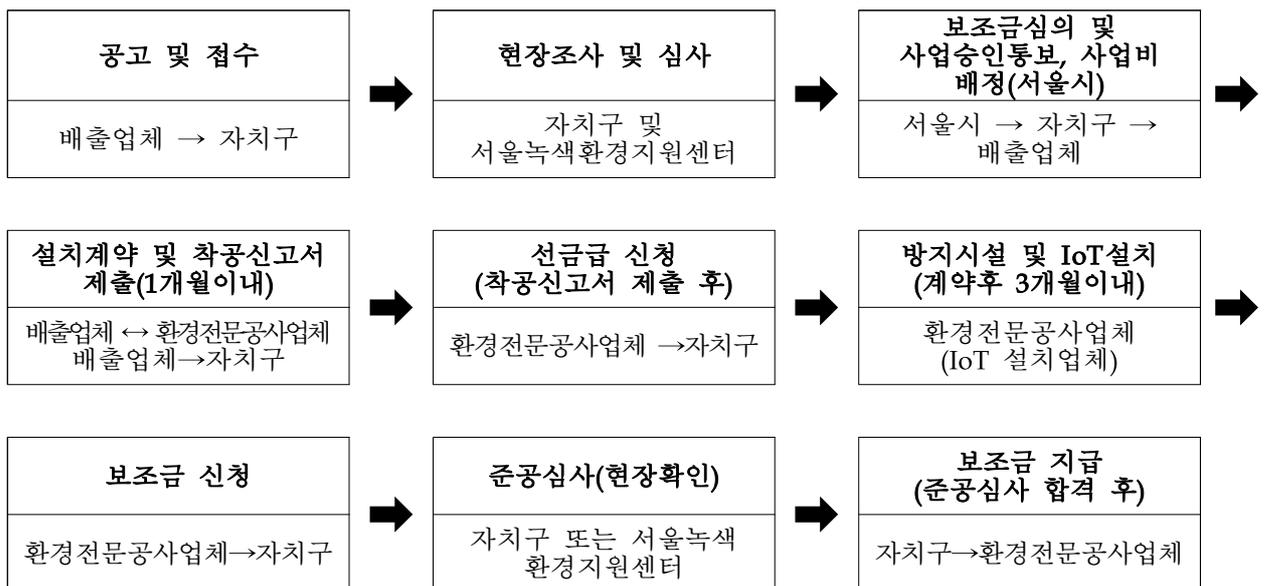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3-1)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3-2)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11. 지원절차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 접수 전 사전 기술진단 신청(자치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가능

○ 현장조사 및 심사 평가 : 100점 만점 평가(붙임 4)

- 평가항목 : 기초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자료전송 등

- 감점사항 : 실제현장과 상이한 설계 작성시(-10점), 자치구 등에서 보완요구시 요구일

로부터 7일 이상 경과될 경우 (-10점) ※ 중복 감점 가능

- 평가결과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12. 추진사항

- 신청접수 : 2024. 1. ~ 11.(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 선정심의 : 매월1회 이상 실시 예정
- 설치계약 : 배출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1개월이내 계약
 - ※ 1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 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 반환
- 시설설치 :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사설 설치
 -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을 반환하고 다음연도 소규모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보조금 지급(자치구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13. 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방지사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사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4.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4.1.)'을 참조하여,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1	종로구	환경과	2148-2467
2	중구	환경과	3396-5623
3	용산구	맑은환경과	2199-7665

연번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4	성동구	맑은환경과	2286-5498
5	광진구	환경과	450-7808
6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2127-4637
7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42
8	성북구	환경과	2241-3047
9	강북구	환경과	901-6754
10	도봉구	기후환경과	2091-3244
11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2116-3214
12	은평구	기후환경과	351-7636
13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330-8497
14	마포구	맑은환경과	3153-8392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2620-4861
16	강서구	녹색환경과	2600-4008
17	구로구	환경과	860-2875
18	금천구	환경과	2627-1522
19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57
20	동작구	환경과	820-9850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879-6263
22	서초구	기후환경과	2155-6449
23	강남구	환경과	3423-6229
24	송파구	맑은환경과	2147-3282
25	강동구	기후환경과	3425-5934

- 붙임 1. 방지사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2.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 3-1.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3-2.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부.
 - 3-3.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1부.
 4.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 5-1.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 통보 1부.
 - 5-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승인결과 통보 1부.
 - 6-1.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설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1부.
 - 6-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1부.
 - 7-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 7-2.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8.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1부.
9.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1부.
- 10-1. 위임장 1부.
- 10-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위임장 1부.
- 11-1. 보조금 반납 약속서 1부.
- 11-2. 보조금 반납 약속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12. 제비율 적용기준 1부(참고). 끝.

[붙임 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호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09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포함)
 - (방지시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및 다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대규모 조리시설 포함)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 하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추진
 - 음식점 또는 단체급식소 등 조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 후 선정된

생활악취 발생시설

4.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6. 우선지원 대상

-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며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인근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 배출기준을 적용받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또는 다수 악취민원 발생 지역 중 해당 지자체장이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 조리시설 미세먼지·악취 저감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생활악취 발생시설

7.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중 90%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1)
-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8. 신청기간 : 2024. 1. ~ 2. 28. 18:00까지

- ※ 예산 소진상황(취소, 부적격자 등)에 따라 추가 모집 공고할 수 있음

9.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 ※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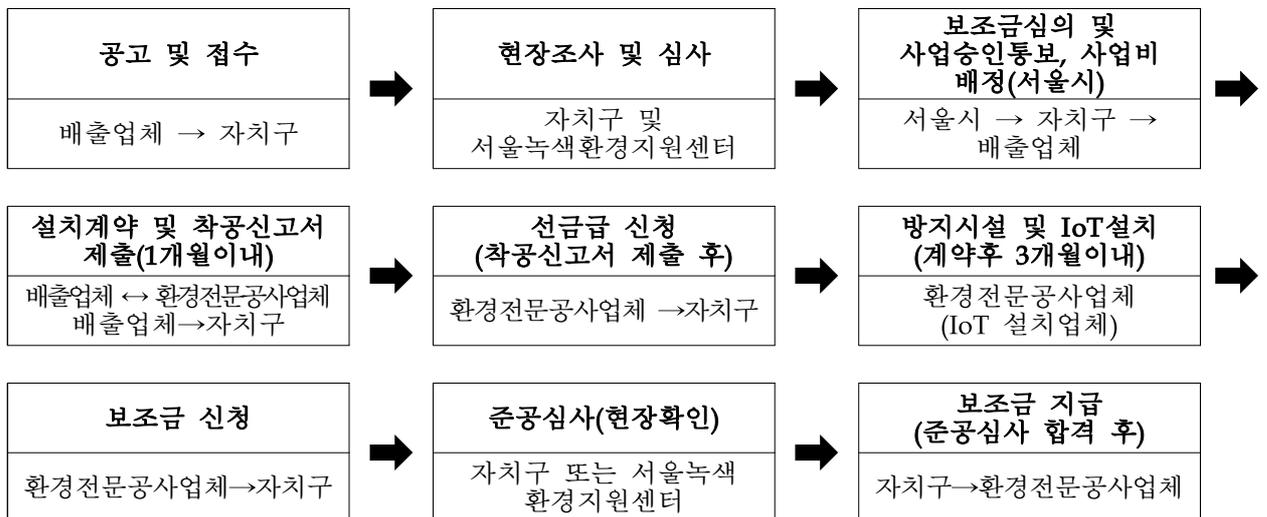
10. 신청서 서류

-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1)

11. 지원절차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 ※ 접수 전 사전 기술진단 신청(자치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가능

- 현장조사 및 심사 평가 : 100점 만점 평가(붙임 4)

- 평가항목 : 기초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40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20점), 사업장 여건(20점), 지원시급성 및 제출서류 충실도(20점)
- 감점사항 : 실제현장과 상이한 설계 작성시(-10점), 자치구 등에서 보완요구시 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될 경우 (-10점) ※ 중복 감점 가능
- 평가결과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12. 추진사항

- 선정심의 : 2024. 4월 (예정)
 - ※ 심의 개최 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현장 심사(설계보완 등)가 완료되어야 함
- 설치계약 : 배출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1개월이내 계약
 - ※ 1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 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 반환
- 시설설치 :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을 반환하고 다음연도 소규모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보조금 지급(자치구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13. 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 14.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4.1.)'을 참조하여,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1	종로구	환경과	2148-2467
2	중구	환경과	3396-5623
3	용산구	맑은환경과	2199-7665
4	성동구	맑은환경과	2286-5498
5	광진구	환경과	450-7808
6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2127-4637
7	종량구	맑은환경과	2094-2442
8	성북구	환경과	2241-3047
9	강북구	환경과	901-6754
10	도봉구	기후정책과	2091-3244
11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2116-3214
12	은평구	기후환경과	351-7636
13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330-8497
14	마포구	맑은환경과	3153-8392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2620-4861
16	강서구	녹색환경과	2600-4008
17	구로구	환경과	860-2875
18	금천구	환경과	2627-1522
19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57
20	동작구	환경과	820-9850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879-6263
22	서초구	기후환경과	2155-6449
23	강남구	환경과	3423-6229
24	송파구	맑은환경과	2147-3282
25	강동구	기후환경과	3425-5934

- 붙임 1.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2.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4.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1부.
 6-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 통보 1부.
 6-2.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1부.
 7.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8.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1부.
9.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1부.
10. 위임장 1부.
11.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12. 제비율 적용기준 1부(참고). 끝.